

대학원장학금지급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가톨릭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93조에 따른 부산가톨릭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장학금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학원의 장학생 선발 등과 장학금 지급에 관해서는 법령 또는 교외 기관(개인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서 따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본 규정을 따른다.

제3조(지급대상) 본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교외장학금의 경우 장학 성격에 따라 수료생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1. 직전학기 성적이 3.0/4.5 이상인 자
2. 학과장 또는 소속학과 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3. 전일제 대학원생 중 강의, 실험, 실습에 참여하거나, 내부 및 외부연구에 참여하는 자
4. 본 대학교에 재직 중인 자
5. 본 대학교 및 학교법인에 재직하는 교직원 본인(정규직에 한함), 배우자 및 직계자녀
6. 본 대학교 학위 취득 후 대학원 학위과정에 진학하는 자
7. 경제적사정이 어려운 자
8. 외국인유학생
9. 외국인유학생 중 한국어성적이 우수한 자
10. 가톨릭 성직자 또는 수도자
11. 석사논문 대체학기 이수를 승인받은 자
12. 주저자로 국제저명학술지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 논문을 게재한 자
13. 본 대학교와 학·연·산 협약을 체결한 기관에 재직 중인 자
14. 온라인석사학위과정으로 입학한 자
15. 석·박사통합과정 진입전형으로 입학한 자
16. 특정직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
17. 그 밖에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사무관장) 장학업무의 사무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처장은 장학기금 조성 및 예산 배정을 담당한다.
2. 사무처장은 장학기금의 관리와 운영을 담당한다.
3. 대학원장은 장학생선발 및 장학금 지급과 그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 2 장 위 원 회

제5조(대학원위원회) ① 대학원위원회에서는 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금에 관한 기본방침, 지급기간 및 기준액 등
2. 장학금 지급과 그 중지 및 취소처분의 결정
3. 장학금에 관계되는 기타 중요한 사항

제 3 장 장 학 금

제7조(장학금 종류 등) ①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한다.

② 교내장학금의 종류와 지급액 및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거쳐 따로 정한다.

③ 교외장학금은 국가기관, 장학재단, 사회단체, 기업, 개인 등이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신청, 제출서류, 선발방법, 지급인원, 지급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교외 기관(개인 포함)의 규정, 지침 등에 따른다.

제8조(유효기간) 장학금의 유효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학기에 한한다.

제 4 장 장학금의 지급 및 관리

제9조(장학금 신청 및 추천)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구비서류를 갖추어 장학금의 종류에 따라 소속학과를 경유하여 대학원 교학부로 제출한다. 다만, 장학금 종류별로 별도 신청 및 추천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르며, 장학금 지급을 요청하는 교내외 공문서 등으로 신청사실이 충분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장학금 신청서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장학금 신청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한 학기를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고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장학금 신청사유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3. 기타 위원회에서 신청자격을 제한한 자

제11조(장학금 지급의 중지 및 취소) 선정된 장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취소한다.

1. 등록을 필하지 않고 휴학한 자
2. 직전학기에 학칙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3. 자퇴자 및 제적자
- 4 기타 장학금 지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12조(장학생 심사 및 선발) 심사 및 선발은 각 장학금 종류별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 없이 대학원에서 선발하여 집행한다. 다만, 대학원장이 특별히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13조(장학금액 및 지급) ① 장학금 지급은 매학기 등록금 납부 시 감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등록금을 기 납부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이체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감면 및 면제 장학금을 제외한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중 정부 학자금 대출자는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며 차액분이 발생할 경우 차액분을 지급한다.

제14조(이중지급 금지) ①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중복 수혜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수혜 대상자에게 유리한 장학금을 적용한다.

② 중복 지원할 수 있는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교출신장학금
2. 외국인면학장학금
3. 한국어능력우수장학금
4. 연구장려장학금
5. 학·연·산협약기관장학금
6. 온라인석사과정입학장학금
7. 통합과정진입학장학금
8. 특별장학금
9. 외부재원(정부사업, 각종 기타사업) 장학금

제15조(장학생의 교체)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생을 교체할 수 있다.

1. 중복수혜대상으로 해당 장학금을 반환하고 포기해야 하는 경우
2.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나 휴학한 경우

제16조(장학생의 자격상실) 선정된 장학생이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7조(수혜기간) 장학금 수혜기간은 당해 학기를 원칙으로 하고, 학비감면장학 수혜는 이수학기를 기준으로 4학기(특수대학원은 5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각 장학금 종류별 별도의 수혜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8조(장학금의 반환) 장학금을 수혜한 자가 미등록하거나 휴학, 자퇴 등의 학적변동으로 인해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학기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별표의 외국인면학장학금은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23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교내장학금의 종류·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장학금 종류	대상	지급기준	지급금액	수혜기간	비고
우수장학금	모든과정	직전 학기 성적이 3.0/4.5이상인 자	수업료의 30%	정규학기 내	
교육지원 장학금	모든과정	강의, 실험, 실습에 참여하는 전일제 대학원생	수업료의 50%	정규학기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에 따라 지원 인원 선발함 ■ 외부연구과제 수행 지도교수의 대학원생 우선 지원함
연구지원 장학금	모든과정	내부 및 외부연구에 참여하는 전일제 대학원생	수업료의 50%	정규학기 내	
교직원 장학금A	모든과정	본 대학교(산학협력단 포함)에 재직하는 교직원 본인(계약직에 한함)	입학금 전액 수업료의 15%	정규학기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은 근무시간 외 개설된 수업을 수강한 경우에만 지급함
교직원 장학금B	모든과정	본 대학교 및 학교법인에 재직하는 교직원 본인(정규직에 한함)	입학금 전액 수업료의 50%	정규학기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은 근무시간 외 개설된 수업을 수강한 경우에만 지급함
		본 대학교 및 학교법인에 재직하는 교직원(정규직에 한함)의 배우자 및 직계자녀	입학금 전액 수업료의 30%	정규학기 내	
본교출신 장학금	모든과정	본 대학교의 학위소지자가 대학원 학위과정에 진학한 경우	입학금 전액	입학 시	
돈보스코 장학금	모든과정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자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수업료의 30%	정규학기 내	
외국인유학생 장학금	모든과정	외국인유학생	수업료의 30%	정규학기 내	
외국인면학 장학금	모든과정	외국인유학생 중 기숙사에 입관하는 자	기숙사관리비의 50% 지원	정규학기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비 제외
한국어능력 우수장학금	모든과정	외국인유학생 중 TOPIK 4급 이상 취득한 자	수업료의 20%	정규학기 내 1회에 한하여 지원	
대건장학금	모든과정	가톨릭 성직자·수도자 신분으로 입학한 자	수업료의 50%	정규학기 내	
플러스 장학금	석사	석사논문 대체학기 이수를 승인받은 자에게 지급(일반대학원에 한함)	수업료의 30%	추가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 추가학기 지급
온라인 석사과정 입학장학금	석사	온라인석사학위과정으로 입학한 자	입학금 전액	입학 시	
연구장려 장학금	모든과정	SCI(E)급 국제학술지	1편당 500,000원	정규학기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저자일 경우 장학금을 1/n로 지급함
		SCOPUS급 학술지	1편당		

장학금 종류	대상	지급기준	지급금액	수혜기간	비고
			300,000원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1편당 100,000원		
통합과정 진입학장학금	통합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진입전형으로 입학한 자	입학금 전액	입학 시	
학·연·산 협약기관 장학금	모든과정	본 대학교와 학·연·산협약을 체결한 기관에 재직중인 자	입학금 전액	입학 시	
공무원 장학금	모든과정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의 특정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	수업료의 50%	정규학기 내	■ 공무원 및 군인연금 가입자
특별장학금	모든과정	별도의 장학금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일정금액	재학 중	
하상장학금	석사	출연자의 조건에 따라 지급	일정금액	정규학기 내	